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재난안전조직 강화, 사회복지직 기준정원 승인에 따른 인력증원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변경(안 제2조)

- 정원의 총수 : 629명 → 633(4명 증가)
- 집행기관의 정원 : 617명 → 621명(4명 증가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 현황(안 별표3)

구 분	합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기 준	629	323	12	134	24	136
조 정	633	326	12	135	24	136
증/감	4	3	-	1	-	-

다. 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: 2016년 12월 31일까지(부칙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2015. 9. 11. ~ 10. 1.(제출의견 없음)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저촉사항 없음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 중 “629명”을 “633명”으로 하고 제1호중 “617명”을 “621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)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정원 중 5급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633	633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611	611				
4급	2	1		1		
4~5급	2	2				
5급	25	10	2	4	1	8
6급 이하	581	581				
전문경력관 소계	1	1				
연구직 계	2	2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2	2				
지도직 계	19	19		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18	18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<u>629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617명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633명</u>----- -----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621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비용 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비용발생 요인 : 공무원 정원 증가(629명 → 633명)
- 나. 관련조문 : 조례 제2조 및 별표 3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4명 증원되고 매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대비 2.8% 상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
- 2016년 비용추계 판단기준은 2015년 기준인건비 중 일반직 1인당 평균 인건비(66,147천원)에 2.8% 인상을 적용

나. 추계 결과 : 2016~2020년까지 총 지출 예상

- 2016년 : 66,147천원 × 102.8% × 4명 = 271,996천원
- 2017년 : 271,996천원 × 102.8% = 279,612천원
- 2018년 : 279,612천원 × 102.8% = 287,441천원
- 2019년 : 287,441천원 × 102.8% = 295,489천원
- 2020년 : 295,489천원 × 102.8% = 303,763천원

다. 재원조달 방안

- 지방교부세 재원

3. 관련 의견

- 공무원 보수 인상률 변경에 따라 비용추계 변경될 수 있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장동기
연락처	(033) 330 -2210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6년)	2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8년)	4차년도 (2019년)	5차년도 (2020년)	계
세 입		271,996	279,612	287,441	295,489	303,763	1,438,301
지방교부세		271,996	279,612	287,441	295,489	303,763	1,438,301
세 출		271,996	279,612	287,441	295,489	303,763	1,438,301
인건비		271,996	279,612	287,441	295,489	303,763	1,438,301
재원 조달		271,996	279,612	287,441	295,489	303,763	1,438,301
의존 재원	소 계	271,996	279,612	287,441	295,489	303,763	1,438,301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271,996	279,612	287,441	295,489	303,763	1,438,301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~3.(생략)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(생략)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~⑤ (생략)